

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(강서영어도서관, 길꽃어린이도서관, 우장산숲속도서관)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10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3년 2월 22일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7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회의 상정·의결(2023. 3. 7.)

2. 제안설명 요지

□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교육지원과장 김영선)

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도서관 운영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¹⁾를 구하고자 함.

1) ※ 재위탁·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

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또한 조례 개정 후(2019.7.17.)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강서구립도서관 운영

나.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내용

- 도서관 시설 관리·운영
- 도서의 열람 및 대출 관련 업무, 도서자료 관리,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전반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 사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,
-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

라. 강서영어도서관 현황

1)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: 강서구립 강서영어도서관
- 위치: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(화곡4동)
- 면적: 541.165㎡(지상2층)
- 좌석수: 128석
- 개관일: 2012. 12. 21.
- 장서수: 42,260권
- 주요시설: 영어자료실, 강의실, 멀티미디어존, 키즈존 등
- 위탁업체: 학교법인 백영학원(現 위탁기간 2018. 10. 4. ~ 2023. 10. 3.)
- 인력현황: 9명(정규직 5명, 계약직 4명)

2) 위탁기간: 5년(2023. 10. 4. ~ 2028. 10. 3.)

3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3년 강서영어도서관 운영 예산: 495백만원
- 산출근거: 인건비 351백만원, 운영비 110백만원, 도서구입비 34백만원

마. 길꽃어린이도서관 현황

1)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 명: 강서구립 길꽃어린이도서관
- 위치: 강서구 금남화로24길 5(방화3동)
- 면적: 577.81㎡(지상1층~지상3층)
- 좌석 수: 100석
- 개관 일: 2007. 1. 26.
- 장서 수: 61,661권
- 주요시설: 유아자료실, 아동자료실, 프로그램실, 보존서고 등
- 위탁업체: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(現 위탁기간 2018. 10. 26. ~ 2023. 10. 25.)
- 인력현황: 11명(정규직 6명, 계약직 5명)

2) 위탁기간: 5년(2023. 10. 26. ~ 2028. 10. 25.)

3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3년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 예산: 540백만원
- 산출근거: 인건비 381백만원, 운영비 125백만원, 도서구입비 34백만원

바. 우장산숲속도서관 현황

1)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 명: 강서구립 우장산숲속도서관
- 위치: 강서구 우현로 34(우장산동)
- 면적: 601.8m²(지상4층)
- 좌석 수: 194석
- 개관 일: 2009. 4. 16.
- 장서 수: 52,156권
- 주요시설: 유아자료실, 아동자료실, 일반자료실, 프로그램실 등
- 위탁업체: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(現 위탁기간 2018. 10. 26. ~ 2023. 10. 25.)
- 인력현황: 7명(정규직 4명, 계약직 3명)

2) 위탁기간: 5년(2023. 10. 26. ~ 2028. 10. 25.)

3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3년 우장산숲속도서관 운영 예산: 474백만원
- 산출근거: 인건비 334백만원, 운영비 90백만원, 도서구입비 50백만원

사. 위탁운영체 신청 자격: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

아.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: 2023. 8.
- 협약 체결: 2023. 8. ~ 9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부칙 제3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: 장석현)

- 본 동의안은 강서구립도서관 3개소(강서영어도서관, 길꽃어린이도서관, 우장산숲속도서관)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²⁾됨에 따라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³⁾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2) ※ 강서구립도서관 위탁 연혁

구분	강서영어도서관	길꽃어린이도서관	우장산숲속도서관
위탁 연혁	2012. 10. 4. ~ 2015. 10. 3. (최초위탁, 3년)	2006. 10. 26. ~ 2009. 10. 25.(최초, 3년)	2009. 2. 19. ~ 2009. 10. 25.(분관)
	2015. 10. 4. ~ 2018. 10. 3. (재계약, 3년)	2009. 10. 26. ~ 2012. 10. 25.(재계약, 3년)	2009. 10. 26. ~ 2012. 10. 25.(재계약, 3년)
		2012. 10. 26. ~ 2015. 10. 25.(재계약, 3년)	2012. 10. 26. ~ 2015. 10. 25.(재계약, 3년)
	2018. 10. 4. ~ 2023. 10. 3. (공개모집, 5년)	2015. 10. 26. ~ 2018. 10. 25.(재계약, 3년)	2015. 10. 26. ~ 2018. 10. 25.(재계약, 3년)
		2018. 10. 26. ~ 2023. 10. 25.(공개모집, 5년)	2018. 10. 26. ~ 2023. 10. 25.(공개모집, 5년)

3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
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

- 구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
- 특히, 강서영어도서관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길꽃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갖춰 특화된 도서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짐
- 동의안 내용 또한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의 제(諸) 기준에 부합되어 사무 위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- 다만, 향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련 법령 1부. 끝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의 위탁)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6. 노동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부칙(제1240호, 2019.7.17.)

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